

광주지방법원 2024. 11. 5 선고 2024가단51142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C

소송대리인 D

변론 종결 2024. 9. 10.

판결 선고 2024. 11. 5.

주 문

1. 피고와 소외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22. 12. 2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60,709,35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709,3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F은 2019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352730호로 소외 E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7. 31. E에 대하여 '27,473,843원 및 그중 27,015,323원에 대하여 2019.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9. 9. 19. 이 사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23년경 주식회사 F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E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2023. 12. 5.경 E에 대한 위 채권 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의 남편이자 E의 아버지인 망 G(H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22. 11. 22.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I, E, J, K가 있었다.

라. 피고와 I, E, J, K는 2022. 12. 27.경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등의 재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위 계약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분할 협의'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23. 1.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1.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마. 한편 2020. 12.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L조합',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2011. 3. 14.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182,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2023. 1. 5.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바. 이 사건 분할 협의 당시 E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당사자의 자백,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사실에 따르면,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금원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바, 원고의 E에 대한 위와 같은 채권은 이 사건 분할 협의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 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 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E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 협의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2/11 지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가 해당 지분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E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 협의 중 E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E은 위와 같은 분할 협의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E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가. 원상회복 방법

앞서 인정한 바대로 이 사건 분할 협의가 체결되기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L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분할 협의 이후인 2023. 1. 5. 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채무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 협의 중 E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변론종결 당시의 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L조합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중 E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 즉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

먼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4. 9. 3. 기준 원고의 E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은 60,709,351원(= 27,473,843원 + 27,015,323원에 대한 2019. 7. 20.부터 2024. 9. 3.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중 원고가 구하는 33,235,508원)에 이른다.

주식회사 M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4. 8. 28.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569,536,2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의 시가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L조합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인 182,000,000원에 미치지 못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은 적어도 70,461,138원 [= (569,536,260원 - 182,000,000원) × 2/11]에 이른다. 이는 앞서 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크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분할 협의 중 E의 법정상속분인 2/11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60,709,35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60,709,3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하중민

별지